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제 5차 인구의 날, 인구절벽 위기의 대응책 마련

##### 01 주요 내용

- 7월 11일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위기의식을 확산하고자 '11년에 '인구의 날'(7.11)을 법제화
  - 제5회 인구의 날을 계기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대책 마련
- 올해는 제3차(2016~2020)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1차년도 시행계획이 추진 중이며,
  - 중앙부처 계획은 저출산 대책 81개, 고령사회 대책 98개 등 총 189개 과제, 예산은 약35.3조원임

\*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에서 유래

구분	분야	과제수 (비율)	예산(억원) (비율)
총계		189 (100.0%)	352,517 (100.0%)
저출산	청년일자라주거대책 강화	20	36,375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2	11,764
	맞춤형돌봄확대교육개혁	17	158,460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12	7,575
고령사회	노후소득보장 강화	10	110,351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3	20,201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29	5,123
대응기반 강화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26	2,55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0	110

-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부문부터 조기 확산이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 난임가구 종합지원 ▶ 남성육아휴직 민간 확산 촉진
  - ▶ 행복주택 시범단지 추가 지정(5→10개소), 결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지원 프로그램 개선
  - ▶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역 내 돌봄 자원 연계 확대)
  - ▶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개선(보육주거지원 등 제도개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 02 경기도 시사점

- 저출산·고령화라는 개별 문제 중심접근이 아닌 한 사회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구정책 차원의 본질적·통합적 접근이 필요
-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율 및 고령화를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인구포럼(GG Population Forum) 구성 운영
  - 기초단체 중 최초로 광명시는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 (4개분과, 80명)를 구성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7.11.)하는 수범사례 확산

\* 인구영향평가 제 도입 기반 구축 연구 실시 중 ('16.6~11월, 보건사회연구원)

## 2.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7.13.)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73% 인상,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는 127→134만원, 주거급여 27.6→28.3만원(경기)
-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

〈 '16년 및 '17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단위 : 원/월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1%가 오른 30%, 나머지는 16년도와 동일한 의로 40%, 주거 43%, 교육 50% 이하 가구로 결정
  - 생계급여는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66,698원 증가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중위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중위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중위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단위 : 원/월

-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 을 반영하여 '16년 보다 2.54%를 상향 조정, 가구원수에 따라 0.3~0.9만원 인상

〈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0.0	(+0.5)	17.8	(+0.4)	14.7	(+0.4)	13.6	(+0.3)
2인	23.1	(+0.6)	20.0	(+0.5)	15.8	(+0.4)	14.7	(+0.4)
3인	27.3	(+0.7)	24.2	(+0.6)	18.9	(+0.5)	17.8	(+0.4)
4인	31.5	(+0.8)	28.3	(+0.7)	22.0	(+0.5)	20.0	(+0.5)
5인	32.5	(+0.8)	29.4	(+0.7)	23.1	(+0.6)	21.0	(+0.5)
6인	37.8	(+0.9)	34.7	(+0.9)	26.2	(+0.6)	24.2	(+0.6)

\*단위: 만원/월  
\*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

### 02 경기도 시사점

- 급여별 선정기준의 확대 및 경기도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상향조정을 적극 건의
  - '17년 기초수급자의 급여수준은 생계급여 1% 인상은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인상을 1.73%에 불과
  - 경기도 평균 생활비가 261만원(통계청 사회조사)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초수급자 급여액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주택임차료 상승은 연평균 11%(전국 평균 10.9%, KB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이르고 있지만,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3년 평균인 2.54% 인상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과 8.7배의 격차가 발생
- 수급자의 실 생활비와 급여 간 격차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충적 복지제도 확대 필요

02

#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전국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비교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1차년 시행계획을 추진 중임

-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는 현대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과제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소요예산은 총 4조8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45억 원(5.7%) 증가\*
  - 분야별로 (저출산) 2조 7,813억 원·(고령화) 1조 7,973억 원·(대응기반) 47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예산 대비 증가치는 고령화 분야가 8.8%로 가장 높음

\*출처: 2016 시행 계획(시도별)

〈표 1〉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예산

계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강원
40,080	4,508	4,004	741	1,741	3,262	599	1,131	1,220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1,293	3,014	3,280	1,908	1,931	4,448	888	4,311	1,720

(단위: 억 원)

- 지방정부의 관련 사업목록 분석결과 일-가정양립 지원, 청년층 지원, 임신·출산 부담완화, 노인 일자리 및 여가 지원 등이 강조
  -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은 자체사업(지방비) 중심으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되고 있음

〈표 2〉 시도별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사업

경기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및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전북	· 전북형 청년취업 및 주거지원 사업 ·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 지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서울	· 서울형 어린이집 확충 ·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실시	전남	· 공공산후조리원·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 새꿈도시(실버타운) 조성사업 추진
인천	·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 인천연고 프로그래밍 협력 일가양육 추진	대구	·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 독거노인 마음잇기 사업 확대
충북	· 출산·육아휴가 대비 대체인력뱅크 운영 · 저소득가구 자녀 자우수강권 지원 · 9988 행복나눔미 사업(노인여가활동)	광주	· 손자녀 돌보미 사업(조부모에 수당지원)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설치·운영 · 출산육아지원협의회 확대 운영
충남	·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추진 · 보육특수시책 지원사업 · 행복경로당 운영 확대	경북	· 결혼자금 저리 융자 지원 · 누리과정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거점치매센터·치매서포터즈 운영
세종	· 임신부 할인혜택·지원 강화 · 아빠육아서포터즈 운영 · 노인 민간취업 연계 강화	경남	·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추진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대전	· 이웃간 돌봄나눔사업 활성화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 · 효문화지원센터 운영	부산	· 출산장려기금 천억 원 조성 · 임신부 배려문화 확산 프로젝트 추진 ·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강원	· 전입세대 출생아 지원 ·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지원	제주	· 제주형 작은결혼식 및 가족성장아카데미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울산	· 보육교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베이비부머 위한 내일설계지원센터 설립		

## 2.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개원 기념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 「인구·복지·재정 : 넥스트 챌린지」</li> <li>일 시 : 7. 19.(화) 10:00 ~ 12:00</li> <li>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li> <li>주 최 : 국회예산정책처</li> </ul>

# 03 FACT CHECK

## 한국인은 왜 기부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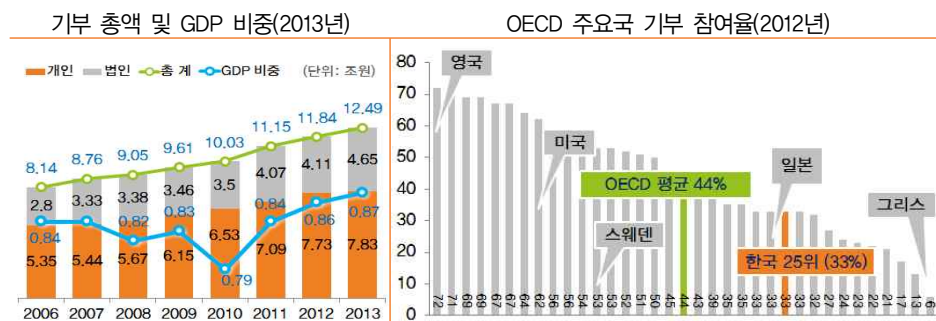
- 자선구호단체(CAF)가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64위를 차지
- 기부는 개인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종 사회서비스로 환원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간극을 없애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종교적 이유의 기부가 약 80%에 이르고 다양한 나눔이 부족한 상황
  - 종교적 기부 참여율은 38.0%정도이나, 금액에 있어서는 종교적 기부(121.5만원), 순수 기부(32.1만원)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제3자를 위한 기여에 익숙하지 않은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일회적인 기부가 70% 수준
  -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유산기부는 미국 전체 기부액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서구문화에서는 보편적이나,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
-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의 전통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한국적 기부문화 형성이 필요
  - 십시일반, 환난상휼의 상부상조 정신은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행해진 만큼 지역을 넘어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연·지정 후원, 후원자 관리 등의 보완책이 필요
-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기부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 및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투명한 운영, 기부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
  -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개인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하며,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프랑스는 기부액의 66%를 세액 공제함
  - 기부금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적극적인 후원자 관리와 온라인 후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속, 상품 구매 등과 같은 쉬운 기부의 확대도 필요

\*자료 : 보건복지부, 나눔실태 2014

\*Giving Korea의 설문조사(2014년)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기부 현황



- 국세청에 신고된 우리나라의 기부총액은 '13년 12조4천9백억원으로 GDP의 0.87%를 차지
  - 개인의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7%로 법인의 기부금(37.2%)보다 25.5%가 높음
- 기부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의 기부참여율은 영국이 72%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은 44%수준이며, 우리나라는 33%로 25위를 차지